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류수거
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

2027123
인정인

여수시 조례 제2027호

붙임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1부

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폐의류(「폐기물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2. 의류수거함(이하 “수거함”이라 한다) 설치·운영·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
3. 수거함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책무) 여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시장이 이 조례의 목

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설치·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. 다만,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·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.

제6조(수거함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③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의류수거함 관리·운영 신고서를 해당 관할부서에 제출해야하며, 의류수거함 설치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폐의류 수집·운반자

제7조(수거함 관리·운영자 업무 등)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·운영자(이하 “관리·운영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2. 의류수거함 관리
3.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
4.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 사항 추진
 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·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·운영자 준수사항) ① 관리·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·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·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.
- ④ 관리·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·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 관리·운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.
- ⑦ 관리·운영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,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거함 철거)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관리·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.

- ② 제6조제3항 및 제8조를 위반한 관리·운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

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.

제10조(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) 시장은 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리부서 및 관리대장) ① 수거함 설치, 운영, 관리·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.
②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의류수거함 관리대장

[별지 제2-1호서식]

여수시 의류수거함 관리·운영 신고서

신청인	단체명 (성명)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	연락처				
	의류함 수량		설치규격 (가로×세로×높이)		
	수거품목		수집·운반 차량번호		
지정기간	20 . . . ~ 20 . . . (년)				

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·운영자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여수시장 (직인)

(뒷면)

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할 수 있다.
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 -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: (서명 또는 인)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1. 관리번호 부착

관리번호 : - 호

관리·운영자(상호) :

연 락 처 :

2.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

배출 가능한 제품 : 의류, 신발, 가방, 담요(솜이불 제외), 누비이불, 침대커버, 커튼, 카펫,
모자 등

※ 이외의 품목은 제외

* 관리번호, 안내문 크기 및 부착위치는 의류수거함 규격 등을 고려 작성 및 부착